

# 고성군반설치조례증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550
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1999. 7. 9.  
제 출 자 : 고성군수

## 1. 개정이유

리의 하부조직인 반 주민의 자치적 사항이나 주민의 대 행정여망사항의 논의를 위해 운영되던 「반상회」가 「주민자치회」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

## 2. 주요골자

○ 명칭변경 : 반상회 → 주민자치회 (안 제7조)

## 3. 관련근거

○ 지방자치법 제4조제6항 및 자치법규의 정비

## 4. 본 문 : 붙임

## 고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고성군반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의 제목 및 본문중 “반상회”를 “주민자치회”로 한다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